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. 3. 31.(금)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3. 17. 정해숙 의원 외 8명 발의 (의안번호 110호)
- 나. 회부일자: 2023. 3. 20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【2023. 3. 28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정해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성북구청 조직개편으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내 상임위 소관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에 따라 의원발의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여 개정사항을 반영,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안의 발의(안 24조)
-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“복지문화국” 을 “복지교육국”, “행정국” 을 “행정문화국” 으로 변경(안 31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¹⁾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입법예고
 - 기간 : 2023. 3. 17. ~ 2023. 3. 22.
 - 의견 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유천곤)

- 본 조례 개정(안)은 개정된 『지방자치법』 제76조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우리 구는 의회 회의규칙²⁾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신설하고, 성북구청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배분과 소관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,
- 검토 결과, 본 조례 개정(안)은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되는 각 조문도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1) 제76조(의안의 발의)

②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.

2)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
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- 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**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**